국방전직교육원 채용공고 의뢰(공고일 ‘22.10.28)

1. **공고 제목** : 한국토지주택공사(LH)「군시설사업 군 자문위원」 채용

2. **기업명**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설립년도	사원수	자본금	매출액	사업내용
2009년	8,757명	659,000억원	241,089억원	하단 별도기재

○ **(사업내용)**
-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 토지 및 도시의 개발
- 주택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
- 기타 공사법에 따른 업무

3. **모집요강**

구분	모집분야	자격요건	모집인원	근무지
기간제	군시설사업 軍 자문위원	하단 별도기재	1명	경기지역본부 (분당오리사옥)

○ **(자격요건)** 채용일 기준, 만 59세 미만의 **육군 영관장교** 전역(예정)자
○ **(고용방식)** 기간제 근로자
- (근무조건) 1일 8시간(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주5일 근무

○ **(채용기간)** 채용일로부터 1년(‘23.3.3 ~ ‘24.3.2) *업무 인수를 위해 2월 출근 가능한자
* 단, 실적평가시 “적격” 판정자 연장가능

4. **우대사항**
○ **공병 병과의** 건설사업 유관업무 경험자 우대
○ 3기 신도시, 위탁개발사업(토지 및 건축)등 사업확대에 따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국방시설본부 등 정책부서** 근무 경험자 우대
○ 자문 및 협상력 강화를 위하여 군시설 이전 관련 군 업무 경험 우대는 **영관급 경력만 인정**
* 부대이전, 부지개발, 건설, 시설 등의 직책인 군시설 이전과 관련된 업무

5. **급여 및 복리후생**
○ 급여 : LH내부기준에 의거「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준용하여 군경력·계급에 따라 차등적용
○ 3,817천원/월 ~ 6,084천원/월 수준

6. **채용절차** 대상자 공고(LH공사 및 국방전직교육원 홈페이지)→서류심사→면접심사
○ (서류심사) 접수자 전원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군경력 증명서(육군본부 발급) 바탕으로 서류 심사점수 8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5배수 선발(5명)
- 평가기준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군경력 증명서
- 평가항목 : 군경력적합성, 군시설이전 이전 군업무경험, 군에서 주요업무성과, 향후업무계획
- 점수배점 : 군경력적합성(30점), 군시설이전 관련 군업무경험(20점), 군에서 주요업무성과(30점), 향후업무계획(20점) 총 100점

- 동 점 자 : 전원합격
- 선정자 발표 및 면접안내 : 11.28(월) 16:00 이후 합격자 개별통보(문자메시지)
  (당일 17시까지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신장애일 수 있으니 반드시 LH지역균형발전기획처 채용담당자에게 유선확인(☏ 055-922-4682)하여야하며,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 (면접심사) 서류심사 결과, 8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5배수(5명)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실시
* 보훈대상자등은 면접참가시 원본자료 제출
- 면접점수 합계 8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평가기준 : 면접위원 면접점수
- 평가요소 : 직업관 및 근면성, LH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역량, 대외협상능력
- 점수배점 : 직업관 및 근면성(30), LH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역량(40), 대외협상능력(30) 총 100점
- 개별면접을 기본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그룹면접 가능
- 선발인원 : 모집분야별 1명
- 동 점 자 : 국가유공자, 서류전형우수자 순
* 서류전형에서도 동점인 경우 『군경력적합성>군시설이전 관련 군업무경험>군에서 주요업무성과>향후 업구계획』 항목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자
- 합격자 선정 : 면접점수 합계 고득점자 선발
- 최종합격자 발표 : 12.09(금) 16:00 이후 합격자 개별통보(문자메시지)
  (당일 17시까지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신장애일 수 있으니 반드시 LH지역균형발전기획처 채용담당자에게 유선확인(☏ 055-922-4682)하여야하며,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7.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및 군경력 증명서(육군본부 발급), 취업지원대상자는 증빙서류
  * 군경력 증명서 내 개인정보는 삭제 후 스캔 제출하고 면접참가시 원본서류 제출, 신분증지참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성별, 연령,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

8.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2. 10.28(금) ~ 11.11(금), 오후 5시 까지

○ 접수방법 : 국방전직교육원 온라인 입사지원 신청과 함께 email 입사지원 (hidaily@lh.or.kr)

* 메일제목에 지원직무 및 성명 반드시 기입

9. **기타**

○ 본 채용계획 및 이에 따른 근로계약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며 정규직 전환 예외대상임

○ 최소 모집단위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별우대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단, 동법 제31조 제3항에 의거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산점을 적용합니다.

○ 이번 채용의 불합격자는 채용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팩스(055-922-4699) 또는 이메일(hidaily@lh.or.kr)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o 처리안내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내용 검토 및 답변 처리
[이의제기 처리 예외 사유]
1)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이의제기와 상관없는 채용제도, 절차 등에 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2) 응시자 정보, 출제위원·평가위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ㄴ요구하거나, 지적재산권(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3) 그 밖에 상기에 준하는 사항

10. **채용서류의 반환**

○ 채용에 탈락한 지원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서류를 반환합니다.
* 다만, 동 법률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또는 지원자가 公社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 청구방법 : 붙임 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작성 후 본인 서명 및 날인하여 E-mail(hidaily@lh.or.kr)로 신청

○ 청구기한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간('22.12.09.~'23.01.08)

○ 기타사항
-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반환서류는 E-mail 수신일로부터 14일 이내 등기우편으로 발송(소요비용은 公社가 부담)되며, 반송되는 경우 재발송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균형발전기획처 군시설사업부 차장 김기현 tel)055-922-4682

붙임 1. 입사지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개인정보동의서 1부.
4. 결격사유 1부.

입사지원서

1. 인적사항

성명	(한글)	지원분야	
현주소			
연락처	(본인휴대폰) (비상연락처)	전자우편	
추가항목	□보훈대상 (가점비율 : □ 5%, □ 10%)		

* 국가유공자 등 가점비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9조로 개별 확인 바랍니다.

2. 병역사항

* 출신학교 등 학력과 관련된 정보 기입 금지

군별		병과/직능	
계급		전역(예정)일자	
군 복무기간	~	(년 개월)	

3. 자격사항

*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 자격/면허를 기입해 주십시오.

자격증명	발 급 기 관	취득일자	자격증명	발 급 기 관	취득일자

4. 군 주요 경력사항

*** LH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입사지원이 불가합니다.**

*** 군 주요경력은 육군본부에서 발급한 군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군시설이전 관련 군업무 경험위주로 작성**

근무기간	소속	직책	계급	담당업무 내용
※ 군 시설 이전관련 근무연수(영관급 이상) 합계 : ( )년 ( )개월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입사취소, 해고 등 귀사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_____ **(인 또는 서명)**

자 기 소 개 서

※ 자기소개서는 최대 2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군에서의 주요업무성과, 향후 업무수행계획 위주 작성

- 군에서의 주요업무성과는 군시설 이전 관련 검토 경험, 군시설 이전업무 수행 경험 등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필히 기재하되,
- 해당 경험이 없을 경우 병과(직능)별 추진했던 주요 사례(성과) 중심으로 작성
- 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

※ 제출한 서류, 증명 등의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본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함에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개인정보 보호법」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같은 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의 규정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2.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다양한 자료 수집 및 활용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3.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서류・면접심사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합니다.

4. 개인정보처리동의서의 사용 기간(채용기간)이 만료되면 동의서와 수집, 이용된 모든 개인정보자료는 즉각 폐기됩니다.

가. 개인정보 수집목적 : 채용 시 필요한 개인정보

나. 수집항목 : 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경력, 자격사항 등의 개인정보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고, 상기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였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결격사유

구 분	내 용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2021.12.17> 10.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5.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16.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자를 포함)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8조> 1.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채용금지 대상인 자 2. 공사에서 근로자로 퇴직한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건설업체 소속의 건설현장 보조인력 등으로서 근로자와 동일 직무를 수행한 자 포함)

	3. 만 18세 미만인 자(단, 관계법령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현장실습 등을 나온 경우는 예외로 함) 또는 만 60세(현장관리직, 폐기물관리직은 65세) 이상인 자. 4. 그 밖에 공사의 근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